

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19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2)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6)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837)
- 공소청법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4)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7)
- 수사절차법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8)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6)
-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2)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0)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6)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2)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0)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2)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8)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4)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8)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5)

-
- 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8)
 -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2)
 - 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1)
 -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4)
 - 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2)
 - 30.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3)
 -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3)
 -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8)
 -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9)
 - 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2)
 - 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4)
 -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5)
 -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9)
 - 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7)
 - 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9)
 - 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8)
 - 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5)
 - 42.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0)
 - 4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6)
 - 4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3)
 - 4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0)
 - 4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2)
 - 4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3)
 - 4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5)
 - 4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5)
 - 5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4)
 - 5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6)
 - 5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5)
 - 5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3)
 - 54.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7)
 - 5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4)
 - 5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0)
 - 5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0)
 - 5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7)

5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5)
60. 과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0)
6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4)
6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9)
6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5)
6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3)
6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00)
6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0)
6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6)
6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8)
6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9)
7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1)
7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9)
7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0)
7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7)
7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8)
7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3)
7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0)
7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1)
7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6)
7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1)
8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4)
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7)
8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8)
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02897)
8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3)
 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1)
 8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9)
 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2)
 8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7)
 8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5)
 9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8)
 9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2)
 9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0)
 9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9)
 94.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0)
 9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9)
 9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6)
 9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2)
 9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2)
 9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8)
 10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8)
 10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6)
 10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9)
 10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5)
 10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0)
 10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3)
 10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7)
 107.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5)
 1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5)
 10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6)
 110. 집단소송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6)

-
11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2)
1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1)
1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3)
1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6)
115.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7)
1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1)
1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6)
118.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6226)
-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
1.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2)	11
2.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6)	11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5)	11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837)	11
5. 공소청법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4)	11
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7)	11
7. 수사절차법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8)	11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6)	11
9.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11
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2)	11
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0)	11
1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6)	11
1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9)	11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2)	11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0)	11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2)	11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8)	11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4)	11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7)	11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8)	11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9)	11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9)	11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7)	11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5)	11
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8)	11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2)	11
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1)	11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4)	12
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2)	12
30.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3)	12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3)	12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8)	12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9)	12
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2)	12
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4)	12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5)	12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9)	12
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7)	12
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9)	12
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8)	12
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5)	12
42.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0)	12
4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6)	12
4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3)	12
4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0)	12
4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2)	12
4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3)	12
4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5)	12
4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5)	12
5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4)	12
5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6)	12
5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5)	12
5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3)	12

54.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7) ······	12
5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4) ······	12
5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0) ······	12
5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0) ······	12
5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7) ······	12
5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5) ······	12
6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0) ······	12
6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4) ······	13
6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9) ······	13
6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5) ······	13
6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3) ······	13
6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00) ······	13
6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0) ······	13
6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6) ······	13
6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8) ······	13
6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9) ······	13
7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1) ······	13
7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9) ······	13
7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0) ······	13
7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7) ······	13
7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8) ······	13
7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3) ······	13
7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0) ······	13
7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1) ······	13
7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6) ······	13
7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1) ······	13
8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4) ······	13

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7)	13
8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8)	13
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7)	13
8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3)	13
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1)	14
8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9)	14
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2)	14
8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7)	14
8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5)	14
9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8)	14
9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2)	14
9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0)	14
9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9)	14
94.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0)	14
9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9)	14
9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6)	14
9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2)	14
9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2)	14
9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8)	14
10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8)	14
10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6)	14
10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9)	14
10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5)	14
10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0)	14
10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3)	14

10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7)	14
107.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5)	14
1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5)	14
10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6)	14
110. 집단소송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6)	14
11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2)	14
1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1)	14
1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3)	15
1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6)	15
115.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7)	15
1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1)	15
1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6)	15
118.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6226)	15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사위 고유법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은 참혹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민국 계엄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계엄군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짐작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며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갈 위험천만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고 야투경을 쓴 중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의 사당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및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하는 등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은 좌절됐지만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은 시민들이 지켜 냈습니다. 국회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비상계엄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심각한 실정법 위반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계엄군 사령관의 포고령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 김어준 방송국을 장악해 22대 총선을 선거 부정으로 몰아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해 국회 자체를 부정하고 박살 내려 했습니다. 친위쿠데타로 윤석열 정권의 집권 강화, 집권 연장을 꾀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폭거는 대한민국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또한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므로 비상계엄의 전제조건부터 헌법 위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한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또한 형법 내란죄 제91조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형법 내란죄 91조에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폭거는 헌법과 내란죄를 위반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국헌문란 내란죄는 사형 내지 무기까지 그 짓값이 무겁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피로써 쌓아 올린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이 자부심을 그 어떤 무도한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다면 국민이 이를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순천자(順天者)는 흥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합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윤석열 정권은 새겨듣기 바랍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18항은 국회법 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상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의가 있습니까?

○유상범 위원 예, 표결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총 11인 중 찬성 10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2)
2.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6)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5)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7)
5. **공소청법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4)
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7)
7. **수사절차법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8)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6)
9.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2)
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0)
1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6)
1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9)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2)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0)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2)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8)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4)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7)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8)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9)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9)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7)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5)
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8)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2)
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1)

-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4)
 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2)
 30.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3)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3)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8)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9)
 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2)
 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4)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5)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9)
 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7)
 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9)
 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8)
 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5)
 42.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0)
 4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6)
 4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3)
 4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0)
 4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2)
 4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3)
 4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5)
 4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5)
 5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4)
 5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6)
 5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5)
 5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3)
 54.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7)
 5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4)
 5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0)
 5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0)
 5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7)
 5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5)
 6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0)

6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4)
6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9)
6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5)
6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3)
6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0)
6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0)
6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6)
6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8)
6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9)
7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1)
7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9)
7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0)
7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7)
7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8)
7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3)
7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0)
7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1)
7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6)
7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1)
8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4)
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7)
8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8)
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7)
8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3)

-
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1)
 8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9)
 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2)
 8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7)
 8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5)
 9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8)
 9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2)
 9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0)
 9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9)
 94.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0)
 9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9)
 9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6)
 9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2)
 9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2)
 9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8)
 10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8)
 10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6)
 10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9)
 10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5)
 10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0)
 10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3)
 10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7)
 107.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5)
 1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5)
 10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6)
 110. 집단소송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6)
 11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2)
 1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1)

1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3)
1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6)
115.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7)
1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1)
1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6)
118.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용민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6226)

(10시06분)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8항까지 이상 11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유상범……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현재 국가가 금융 및 외교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당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 법사위, 법안 심사를 위해 오늘 소집한 이날이 참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께서 발표한 내용이 워낙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필요하고 또한 지금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충격으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많은 위원들이 현재 이 법사위 회의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저희 당에서도 조만간 긴급 의총이 소집되어서 위원들 간에 오늘 아침에 발표된 내용 또 기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가 필요한 시간이, 당대표로부터 요청이 됐고 저희 위원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법사위가 중요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한가하게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법사위 일정은 오전 중이라도 정회를 하셔서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또한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결국은 나라를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는 우리 법사위를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서 제가 유상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리면, 한동훈 대표의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사 제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에서 나온 속보인데요 ‘한동훈,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 필요 판단’, 아마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총 하신다고요?

○유상범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지금 유상범 간사님이 대표로 나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면 타당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민주당 측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박지원 위원 지금 유상범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민을 전 세계적으로, 특히 보수 정권은 미국과 함께한다고 하는데 미 백악관이나 미 국무성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캠벨 부장관,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번 정신 나간, 미친, 바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전 세계가, 우리 모든 경제가, 우리 국민이 멀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엄을 막은 것은 민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젊은 군인·경찰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관건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 그래서 만약 한동훈 대표가 솔직하게 ‘이번 탄핵을 국회에서 찬성하겠다’ 하는 발언이 나오기 전에는 믿지 못합니다. ‘간동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당 위원들의 충정을 이해하지만 그 현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도 중요하지만 현안 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엄격한 질문을 하고 관계 장관들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민주 대한민국 국민에게, 젊은 군인에게, 젊은 경찰에게 하는 보답이라 생각해서 저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정리되면 오후에 참석을 하더라도 이대로 법사위는 계속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국민의힘 의총이 11시에 소집돼 있다 그렇니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진행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총을 해서 다 못 들어오는데 민주당만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원 위원 현안질의 하고 법안 심의는 오시면 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지원 위원 지금 말이지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단신으로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 평균 지지도가 16%입니다. 계엄 후는 13%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민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범 간사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법사위에서……

○위원장 정청래 마이크 켜고 하세요.

○**박지원 위원** 그러나 우리 법사위에서 이러한 현안을 두고 대법원의 입장은 어떤 건지 현재의 입장은 어떤 건지 법무부장관은, 특히 국방장관직무대행이 나왔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부두에 정박된 선박이 쥐 떼들이 다 뛰어내리면 나가서 침몰한다고 합니다. 쥐들이 먼저 안 거예요. 도대체 내란수괴인 윤석열, 김용현은 이대로 두고…… 어떻게 진행됐나 이거지요. 어제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을 보세요. 중앙일보 사설을 보세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이기홍 칼럼을 보세요. 이건 안 됩니다. 정신이 이상한 대통령을 이대로, 단 한 시간,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변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탄핵에 찬성하겠다 하는 확실한 입장이 발표되지 않고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질문을 하고 관계 장관들의 답변을 듣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리고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유상범 간사님, 11시 의총이니까요 다른 법사위원님들 일단 들어오시라 하시고, 아직 회의가 진행이…… 저는 지금 회의 중인 줄 알았습니다. 의총 진행 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11시라면 일단 들어오시라고 하고요. 일단 진행을 하고 차차 좀 더 판단해 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법안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들 검토보고는 아니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순서는 진행하도록 할 테니 다른 위원님들 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제1항부터 41항까지 법률안에 대해 짧게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41건의 법률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서면으로 하세요. 지금 이것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펼 수는 없으니까요. 시작했으니까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 검사정원법은 검사의 업무량 및 형사사건 처리 기간의 증감 추이 등을 고려해서 검사의 증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공소청법안, 의사일정 제7항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 수사절차법안, 의사일정 제9항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의사일정 제36항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4건의 경우 검찰 수사 권력 배분이 권리 견제와 균형 및 그리고 전반적인 국가 수사 역량 및 범죄 대응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으로 가겠습니다.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진정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인지 그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의사일정 제22항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법안인데 실체적 진실의 효율적 발견이라는 측면과 자기부죄거부 특권과의 상충 등을 조화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꽈규택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고소인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려는 법안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고요.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서 및 조서를 피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법안인바 이것도 사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9항으로, 19쪽으로 가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인바 그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4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개정법안 역시 음란·폭력·마약 등을 과도하게 묘사하는, 구독을 제한하는 내용인바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2항부터 제61항 및 제118항을 검토보고하게 되는데요. 118항이 방금 전에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 의결한 사항입니다만 이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수사요구안입니다. 그래서 제118 항 법의 제목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61항까지 및 118항, 20건의 법률안과 1건의 수사요구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사 정원을 현행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총 370명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법관 수, 재판 지연의 문제, 신규 법원 설치 등 이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판사 정원 증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재판 지연의 문제는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정원을 90명 확대하는 것에 대한 예산 확보 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꽈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도로교통법에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반의사불벌죄 규정과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타당해 보입니다만 다만 시행일을 최근에 통과된 도로교통법 조문과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법률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동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62항부터 제92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의사일정 제62항에서 제92항까지 3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위원회 추천위원회 설치,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확대, 감사위원회 의결 공개, 디지털 자료 취득 방법·절차 규정 및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자의 열람·복사권 보장, 변호사의 참여권·이의제기권 보장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감사위원회 추천위원회 설치는 감사위원 제청 및 임명 과정에서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확대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역할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과 감사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감사업무 수행에 미칠 수 있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는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비공개 의결사항에 대한 국회 보고와 관련하여 국가기밀,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보고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9항·70항·72항·75항·76항 박군택·서영석·김주영·이종배·조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의료기관 등 불법개설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측면,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의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전문 조사인력과 관련 자료, 진료비 지급기관으로서의 업무 전문성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는 장소적 한계가 있거나 수사의 긴급성이 요구되는 예외적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비공무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93항부터 제117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93항부터 제117항까지 2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97항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소송당사자가 증거를 보다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증거 편재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소송당사자의 변호사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제도의 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일반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혐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등을 배상명령 대상에 추가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 배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조은석 감사원장권한대행 나오셨습니까?

○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예.

○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차관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김선호 국방부차관 나오셨습니까?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나왔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모두 발언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정감사 때처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으로 하시고 못다 하신 부분은 재보충 토론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에 따라서……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질의 순서도 있지만 오늘 엄중한 시기인데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송석준 위원** 쓸데없는 발언이라니요!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7분간 토론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라니까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 의사 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장경태 위원** 회의 개시 전에 오셨어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정신들 차리세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정신 누가 먼저 차려야 되겠어요?

○**위원장 정청래**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신 차리세요.

○**장경태 위원** 대법원 기조실장님!

○**유상범 위원** 그게 여기서 왜 나옵니까?

○**송석준 위원**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고.

○**장경태 위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처장님, 기조실장님 없으세요?

○**유상범 위원**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정청래**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장경태 위원, 빨리 토론하세요.

○**장경태 위원** 예, 질문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송 위원,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송석준 위원** 그러면 오늘 뭐 할 때입니까?

○**장경태 위원** 아니, 조용히 좀 하세요!

○**박지원 위원** 왜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뭘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장경태 위원** 누구 때문에 무너졌어요! 적당히 좀 하세요!

○**송석준 위원**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게 누구입니까?

○**이성윤 위원** 윤석열 때문이야! 윤석열 때문에!

○**장경태 위원** 그만하세요. 적당히 좀!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쓸데없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 정청래** 자, 오늘은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사진행……

○**장경태 위원** 민간인한테 총부리 겨누게 돼 있습니까, 군인이? 군인이 민간인한테 총부리 겨누게 돼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님들, 조용히 하시고요.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은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시면 제가 145조에 따라서 경고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 오늘같이 엄중한 날에도 경고하고 또 쫓아낼 거라고요?

○**장경태 위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아세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은 아까 유상범 간사가 다 했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송석준 위원** 뭐 하는 짓이냐니요?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 토론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그렇게 말씀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토론하세요.

○**송석준 위원** 우리 법사위부터 정상화합시다.

○**장경태 위원**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장경태 위원** 계엄령 선포 계획 언제 아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차관, 저는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국무회의에 참석도 안 하셨네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저는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장경태 위원** 그러면 계엄령 선포 시부터 그 이후에……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 그 이후에 포고령이 공포되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 소집돼서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도 모르셨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언론에서 보고 부대에 복귀한 게 한 23시 40분 경이니까 그 이후부터는……

○**장경태 위원** 23시 40분에 어디 계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는 그때 국방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상황실에서 뭐 하고 계셨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때 그 상황 조치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보고만 있으셨나요, 아니면 여러 정부기관에 파견 요청을 차관께서 직접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런 적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없습니까? 내란죄 행위에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공범은 아니시라는 얘기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조치한 사항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계엄사 파견 요청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기조실에서 삭제하고 보내셨어요.

파견 요청 접수 일시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간부회의 하셨으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국가 중대 사안인 만큼 제가 좀 차분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비상간부회의 참석한 것은 12시 50분입니다. 그 전에 아마 일부 차장과 실장 중에서 긴급 상황이니까 일부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보고 와 달라는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공식적인 계엄사에서의 협조 요청이라든지 공문 접수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요, 파견 요청에 대한 논의를 간부회의에서 하셨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 그 말씀 드릴까요?

○장경태 위원 논의를 하셨고, 파견 요청 언제 받으셨냐고요?

지금 대법원 안전관리관 나오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파악하기로는 12시 50분에 제가 왔는데 안전관리실 담당자가 계엄사로부터 사무관 파견 요청 수령한 시점은 12시 56분이라고 그립니다. 그리고……

○장경태 위원 안전관리관이 간부회의에 보고한 시간이 12시 56분이잖아요. 안전관리관이 언제 계엄사로부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접수를 받았느냐고요? 안전관리관 군 출신이잖아요, 대령 출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러니까 안전관리실의 담당자가 계엄사에서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즉시……

○장경태 위원 몇 시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게 한 12시 55분 전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관리관에게 보고를 했고, 관리관이 그 무렵 올라와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보고 시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1시 전후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 간부회의 회의록 갖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회의록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없습니까? 녹취도 안 하셨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말씀드렸지만 저도 자다가 12시 50분쯤 가서 이루어진 거라서 정식으로……

○장경태 위원 왜 계엄사로부터 접수 요청 일시에 대해서, 접수 경로 이거 왜 자료 안 주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것은 아마 제가 오늘 직접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장경태 위원 아니,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서면으로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알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그러면 파견을 왜 안 하셨어요? 계엄이 정식으로 해제된 건 05시 01분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벌써, 그 전에 12시 47분에 국회에서 다행히 우원식 의장께서 회의를 소집한 상태고 그때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회의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갔을 때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해제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검토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도, 대법원 간부회의에서도 이 계엄령 선포가 위법하다는 걸 직시하시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을. 왜냐하면……

○장경태 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다른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재판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지 싶어서.

그래서 헌법이나 계엄법이나 또 포고령이나 담화문에 나온 자료 그리고 판례에 비춰 봤을 때 거기에 적힌 내용 중에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게 저희 사법 관련 부분이니까, 사회질서가 극도의 교란으로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과연 볼 수 있는지, 두 번째로 담화문에 계엄 사유로 밝힌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거라고 볼 수 있는지, 또한 입법 독재로 인해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또한 경찰력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그리고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에,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 논의를 하던 중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었고, 헌법에 따르면 해제 결의는 당연히 대통령이 수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황이 종결된 것으로 봤습니다.

○장경태 위원 결론적으로 계엄 비상사태 선포가 법률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우려가 크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의결된 즉시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시까지 기다리신 건 아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제가 질의하고 끝나고 좀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기회 요청하셔서.

법무부장관님, 국무회의에 언제 참석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장경태 위원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수행비서가 다 확인하셨겠지요?

장관님,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란죄 공범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장경태 위원 아니, 저는 내란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를 제지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와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엄령의 선포자는 대통령이지만 계엄령을 의결한 건 국무위원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 가셨잖아요.

찬성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 거기에 의결한 의결 사실이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의결 안 하셨어요?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령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심의라고 돼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심의, 그러니까 심의할 때 어떤 의견 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다들 많은 걱정하시는 이야기를 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의견 내셨냐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도 다양한 그런 의견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반대하셨느냐고요, 찬성하셨느냐고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셨습니까, 가능하다고 피력을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여러 가지…… 방향은 있을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장경태 위원 법무부장관 맞으세요? 대통령에게 법률적 해석을 하셔야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거기 있었던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부정적으로 의견 내셨냐고요, 긍정적으로 내셨냐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법률적 요건을 법무부장관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의도 안 하고 계엄령 선포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하고 사전에 상의한 바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상의는 안 하셨겠지만 의견은 내셨을 거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상황은 개별적인 의견, 그 상황에 대한 의견을……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장경태 위원 4일 날 그러면 행안부장관하고 대통령 안가 가셔서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누구누구 오셨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것은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 자리를 못 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장경태 위원 친목 모임을 하신 거예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니, 그러니까……

○장경태 위원 김용현 장관후보자도 대정부질의에서 그러셨다니까요.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친목으로 만났다 했는데 결국 계엄 선포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 이야기를 좀 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사의를 다 표했으니까 다시 자리를 만들기가 어려울 거다, 다 다른 약속은 취소됐으니까……

.....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이성윤 위원 송년회 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송년회 아닙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법무부장관님, 대통령 안가에 갔던 차량이 찍혀서 보도가 됐던데 대통령 만났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닙니다.

○위원장 정청래 왜 갔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날은 대통령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대통령 안가에 왜 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장소……

○위원장 정청래 누구 만났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안부장관하고 저하고 여기 계시는 법제처장님하고 이렇게……

○위원장 정청래 제2의 비상계엄을 또 그러면 얘기했습니까?

○장경태 위원 내란죄 재판 준비하러 가신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내란죄 재판 어떻게 할지, 대응할지……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정청래 왜 만났는지 다 밝혀지겠지요.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법원행정처장님 답변이 좀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다 법률가들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내지는 대법원에서 회의를 했다고 그리고, 또 법무부장관도 법률가 아닙니까?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입 꾹 닫고 한마디도 안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계엄 포고문 1호가,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포고령 1호가 돼 있으면 법률가들께서는 ‘무슨 얘기냐? 헌법 77조를 봐라’…… 3항에 뭐라고 돼 있느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지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어요.

또 뭐라고까지 돼 있느냐면 폐회 중에 비상계엄을 하면 대통령이 집회를, 국회를 열라고 요구하게 돼 있어요, 폐회 중에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그러면 국회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이 비상계엄을 해제할지 말지, 당연히 해제한다고 의결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77조 3항 위반이라고 대법원에서 왜 먼저 말을 못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왜 말을 못 합니까, 이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했다고? 입 꾹 닫고 눈치 봤습니까?

다행히 시민들이 계엄군 몸으로 막아서고 국회의원들이 긴급하게 담 뛰어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을 뛰어넘었고 이재명 대표도 담을 뛰어넘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담을 뛰어넘다가 얼굴부터 떨어져 가지고 부상까지 당했어요.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포고령 1항은 명백히 헌법 77조 3항 위반이다 한마디만 해 줬어도 그 불안감이 덜했을 거 아니에요. 제때 말하지 않고 지금 와 가지고 변명조로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열받습니다.

○**장경태 위원** 포고령 1호 선포됐을 때부터 위법하다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입장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청래** 우리 국회의원들도 금방 알았어요, 이거.

○**장경태 위원** 국회가 만약에 계엄령 해제 의결 못 했으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당시에 비겁했다. 솔직하지 못했다. 겁났다. 용기가 없었다’ 차라리 이렇게 자기 양심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지난 3일 저녁 그리고 4일 새벽에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40여 년 만의 비상계엄 그리고 또 우리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당의 한 성원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머리 숙여서 송구스러운 마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법사위에서 법사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바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주무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믿기 어려운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 사태 그 와중에 어제 바로 이 신성한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또 검찰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인에 대한 탄핵이 있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계엄 상황에서 당사 가서 지키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이 국회 본청에 집합하셔야지!

○**박은정 위원** 표결하셨어요? 표결 참여하셨나요!

○**장경태 위원** 본회의장에 오게 돼 있어요. 국회 비상계획 보세요! 전시 상황에서도 그럴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겹박적인 분위기에서 법사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정청래** 자, 여러분 일단……

○**박은정 위원** 계엄 해제 표결 참석하셨나고요!

○**송석준 위원**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일단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발언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발언 계속하세요.

○**송석준 위원** 질서 좀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본인부터 잘 지키시고요.

○**송석준 위원** 경고를 아무 데나 남발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개입하는 분들한테 경고 좀 엄중하게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하세요.

○**송석준 위원**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어떤 기관입니까?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 돼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 받침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국회가 결정한 예산 그리고 국회가 입법한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정부 각 기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 각 기관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들에 대한 직무 감찰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또 우리 국회에 보고해서 국회에서 대행정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야말로 가장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원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장님을 어제 바로 민의의 전당 이곳에서 탄핵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탄핵이라는 것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을 때 가장 엄중한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탄핵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 하나하나를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원했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때 대통령을 찍지 않은 분까지도,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고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국정 수행하는 분입니다. 그 국정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갖다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잘못된 행위라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를 감사한 것을 갖고서 표적 감사라고요? 그러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이 저지른 과거의 비리는 덮어 두는 것이 감사원의 진정한 직무입니까? 잘못된 것을 감사하는 것을 표적 감사라고 하고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갖다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매도하면서 감사원장을 탄핵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회가 탄핵 권한은 있지만 탄핵 사유가 없는 그러한 엉터리 무자비한 탄핵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에 의한 표결 폭력에 의한 입법 쿠데타 아닙니까?

○**장경태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회의원 비상계획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회의원 비상계획에 당사 가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 비상계획에 당사 가게 돼 있느냐고요!

○**곽규택 위원** 좀 들어 보시라니까!

○**박준태 위원** 여기 우리랑 싸우려 왔습니까?

○**송석준 위원**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 존경하고픈 법사위 민주당 그리고 야권 위원 여러분!

○**박지원 위원** 당신 당대표가 계엄군에 체포되려고 했어도 참아야 돼?

○**송석준 위원**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습니다. 표결 폭력을 통해서 입법 쿠데타를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어제 저질렀습니다.

○**장경태 위원** 제정신이에요, 진짜?

- 이성윤 위원** 윤석열은 계엄 놓단했습니다!
- 장경태 위원** 정신 나가셨어요?
- 송석준 위원** 여러분들은 비상계엄을 위헌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 박준태 위원** 들어 보세요, 좀!
- 박은정 위원** 비상계엄이 그러면 위헌 아닙니까? 계엄이 적법했습니까?
- 이성윤 위원**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내란죄!
- 장경태 위원** 그러면 내란죄로 다 잡아가듣가요! 입법 쿠데타요?
- 곽규택 위원** 들어 보세요!
- 송석준 위원** 존경하고픈 야당 범야권 위원 여러분, 제발 우리 정신 차립시다.
- 박은정 위원** 계엄이 적법했습니까, 그러면?
- 송석준 위원**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헌법 파괴 행위 하지 맙시다. 다수 의석을 점했다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시대정신을 무시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십시오.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 박은정 위원** 계엄이 적법했습니까? 계엄이 적법했냐고요!
- 위원장 정철래**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 잠깐만요. 박은정 위원님도 앉아 주시고.
- 송석준 위원** 여러분들의 이 무질서한 행위, 이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엄정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 박은정 위원** 뭐가 무도합니까?
- 곽규택 위원** 지금 하는 게 무도한 거예요!
- 박은정 위원** 뭐가 무도합니까? 계엄이 적법했냐고요!
- 장경태 위원** 반란군이 국회 본청 앞까지 왔어요. 본회의장 앞까지, 본청까지도 왔다고!
- 송석준 위원** 어제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뿐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서 희생 헌신하는 중앙지검장, 더구나.....
- 위원장 정철래** 조용히 하세요, 위원님들.
- 일단 발언 기회를, 들어 주세요. 일단 발언을 들어 주세요.
- 송석준 위원** 이렇게 무질서한 행위를 일삼는 법사위의 현장 바로잡아 주세요. 엄중한 경고 부탁드립니다.
- 박은정 위원** 계엄이 적법했냐고요. 지금 대답하세요, 송석준 위원님!
- 위원장 정철래** 박은정 위원님도 일단 앉아 주시고요.
- 송석준 위원** 존경하고픈 박은정 위원님, 자중하세요. 질서를 지켜 주세요.
- 박은정 위원** 계엄이 위헌이라고 우리가 비난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엄이 합헌이고 적법했는지 대답하시라고요!
- 곽규택 위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앉으세요!
- 위원장 정철래** 일단 앉아 주세요.
- 박은정 위원** 계엄이 적법했는지 대답하세요!
- 곽규택 위원** 앉으시라고, 앉아! 뭐 하는 짓이야 지금!
- 박은정 위원** 곽규택 위원님,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합헌이었는지 대답을 하세요!

○**곽규택 위원** 국회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두 분 다 앉아 주세요.

○**박은정 위원** 본인이 대답하시라고!

○**곽규택 위원** 앉으세요!

○**박은정 위원** 대답하시라고!

○**곽규택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위원장 정청래** 두 분 다 앉아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 1분 남았는데 발언 마저 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어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함으로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사태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정치권의 비리,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재판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과거 헌정사에도 없는 이 만행이 바로 국회에서 바로 범야권에 의해서 자행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쿠데타 아닙니까?

존경하고픈 야권 위원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심호흡을 길게 하시고 정상적인 사고로 판단해 주십시오. 오죽하면 중앙지검 차장검사 일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동 그리고 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으로 이렇게 성명서까지,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제발 법사위 우리부터 정신 차리고 헌정 질서, 무너져 가는 헌정 질서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법사위원회로서 위원님들의 발언 기회를 자유롭게 드리고 주의·주장·의견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고 다만 혀위 사실 등 국민들이 인식을 잘못할 경우는 제가 개입해 왔습니다만 지금이 매우 엄중한 시기고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온 국민들이 지금 상처받고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이 마당에 그리고 또 삼권분립 자체를 부정하고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가려고 했던 이런 비상계엄의 만행에 대해서 규탄해도 모자랄 마당에 국회를 침탈당한 국회의원 본인이 범야권 만행이라느니 입법 쿠데타라느니 이러한 경천동지할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매우 불쾌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야가 나눠서 논쟁할 때입니다? 침탈당한 국회의 권위, 상처받은 국민들의 가슴

을 여야를 떠나서 위로하고 헌법 부정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꾸짖고 그려는 자리가 오늘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이런 정신 나간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경고 합니다.

○**유상범 위원** 정신 나간 발언이 어디 있어요?

○**곽규택 위원** 정신 나간 발언이 뭐니까?

○**위원장 정청래** 정신 나갔지!

○**유상범 위원** 송석준이 발언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계엄에 대한 입장을 안 밝혔어요?

○**이건태 위원** 앞말과 뒷말이 다르잖아요!

○**유상범 위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탄핵에 대해서 비판 못 해?

○**위원장 정청래** 여보세요!

○**이건태 위원** 송석준 위원의 말은 앞말과 뒷말이 달라요.

○**위원장 정청래**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범야권 만행이니 입법 쿠데타니 이런 것을 입에 올릴 수 있어요? 아무리 동료 위원이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야가 싸운다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발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당 야당을 떠나서 헌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헌법을 유린한 자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처벌해야 될 것을 논의해야 될 자리가 오늘입니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 위원님들.

○**박준태 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우리 꾸짖으려고 나오셨어요?

○**위원장 정청래** 꾸짖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박준태 위원**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얘기를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요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입니다. 검찰은 서울고검장 박세현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방금 속보가 떴는데 법무부장관 이것 알고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닙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알았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앞으로 그러면 수사에 관여를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개별 사건 수사에 지금 까지 장관으로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오해받을 짓 하지 마세요.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전현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헌법 77조, 계엄법 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다.

현재 처장님, 현재 대한민국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계엄법 발령 요건 구비하고 있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현희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런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계엄 선포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지금 계엄령을 발포한 겁니다.

영상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영상 봐 주시지요.

그날 밤 국회에는 헬리콥터, 장갑차 그리고 총으로 무장된 특수부대들이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바로 입구까지 진입했고 국회의장실 또 여야 당대표실까지 기물을 파손하면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 비상 계엄에 또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이것은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 관장사항은 행정·사법이고 헌법상의 권한인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법부, 헌법기관은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명확합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를 침탈한 이 상황은 법에서 금하고 있는 내란죄가 성립하는 범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 제가 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점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부터 저희들이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 최종적으로 해당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 드릴 지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처장님, 전에 이해충돌 여쭤볼 때도 답변을 회피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나 명확하니까 좀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 규정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내란죄입니다. 여기서 국헌문란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 즉 국회 또 선관위 이런 기관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거지요.

지금 윤석열의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봅니다.

판례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12·12 사태 때 판례에 의하면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국회에 대해서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이것은 국헌문란이다. 그래서 당시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수괴로 형사처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판례 있는 것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분명합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처음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감사원장직무대행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국회를 침탈한, 장갑차와 헬리콥터 그리고 총칼을 들고 국회에 난입한 특수부

대 계엄군들 그리고 몸싸움과 국회 기물 파괴 그리고 출입 통제 이런 것이 실제로 그날 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내란죄의,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한, 그 권능을 불능하게 만들려는 그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예전에 미국의 모 대법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거와 법리를 논하기 이전에 보면 안다’ 이런 논리로 판결하신 게 있습니다. 저는 ‘보면 안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전현희 위원** 보면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공수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공수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어쨌든 위원님께서 열심히 수사하라는 취지로 알아듣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헌법재판소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방금 보신 그 상황?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결국 비상계엄과 관련이 돼 있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이미 4건의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사건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개인적인 판단을 묻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명확하게 국회를 침탈했고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하신 분들께서 아무 말씀 못 하고 계시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물론 법원이나 현재에서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그것은 개별 수사 담당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별 판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는지 적어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무처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판례와 법률 규정에 비추어서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죄에 대한 판단은 종국적으로 법원에서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법원에서 내리는데 현재 처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냐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현희 위원** 여기에 지금 뭐 하려 오셨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그 판단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법무부장관은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탄핵이 지금 발의가 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전현희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성재**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위원** 법제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고요.

○**장경태 위원** 형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반했냐 안 했냐를 왜 몰라요,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전현희 위원** 법제처장님 답을 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안 하는데 제재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안 하잖아요. 지금 성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국민들께서.

○**법제처장 이완규**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가 되면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헌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장경태 위원** 대통령 안가 갔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다 공범이라서?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장경태 위원! 장경태 위원!

○**장경태 위원** 공범이잖아요, 안가 가서 지금.....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유상범 위원** 어떻게 공범이라는 소리를 함부로 해!

○**장경태 위원** 공범이지요, 그러면! 내란죄 위반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지금 형량을 물어봤어요?

○**유상범 위원** 뭐가 공범이야! 내란죄는 사법적 문제야!

○**장경태 위원** 본인이 무기징역이냐고 물어봤어요? 위반했냐 안 했냐를 왜 답변을 못 해요?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의 말씀을 잠깐 들어 주세요.

저한테 전달해 온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긴급 의총을 하려나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황상 법안에 대한 직접적인 토론보다는 대체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상계엄 불법 사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으니 오늘 소위로 넘겨야 될 안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로 넘기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의사 진행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8건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부분은 법안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위로 넘기는 의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법안에 대해서 꼭 하실 말씀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균택 위원** 제일 마지막 안건까지 포함한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청래** 예.

○**박균택 위원** 내용 중에 보면……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박균택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잠깐 1분만 말씀하세요.

○**박균택 위원**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봤고 모두가 다 동의하는 범죄를 두고서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범죄 혐의’라는 표현을 분명히 써 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원래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성안할 때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까지 의혹이라는 말을 써서 제가 의혹이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안 제목에는 ‘내란 행위’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충분히 그것은 법안소위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법안소위를 해야 되니까요 충분히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18항까지 이상 118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간사님과 유상범 간사님과 위원장이 협의한 결과 의원총회는 전원 필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서영교 위원** 11시 반까지 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국민의힘이 11시고요 민주당이 11시 반 이렇게 됩니다.

○**장경태 위원** 질의 순서를 바꾸면 되잖아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오후에 와서 하셔도 되고. 11시 반까지는 진행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시지요. 엄중한 시간인데……

○**장경태 위원** 질의 순서를 바꾸시면 되지요, 가능한 분들만 하시고 뒤로 빠지시면.

○**유상범 위원** 엄중한 시간인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 또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좀 해 주세요.

알아서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유상범 간사님께서 퇴장을 하셨는데 의총 전까지 순서에 관계 없이 꼭 발언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그리면 박지원·서영교·박은정 이렇게 세 분 발언을 하고 의총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분만 정회 전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기왕 세 분이 발언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이 먼저 하시고 박은정 위원이 하시고 그다음에 박지원 위원님 마지막에 하시고. 그렇게 어차피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님, 모르셨다고 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방송을 보고 알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국방부차관이 몰라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 앞에 사과하셨는데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하십시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일련의 사태가 발생해서 우리 국민들께 우려를 드리고 또 그동안 군에 보내 주셨던 신뢰 이것에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과실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저로서 앞으로 부여되는 모든 책임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법무부장관이에요. 법무부장관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심의하면서 ‘아니다’ ‘안 된다’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법무부장관도 국방부차관처럼 국민 앞에 이 잘못된, 위헌·위법한, 불법한 비상계엄 심의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사과하세요.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무슨 의견을 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께 이런 분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게 짧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사과해야 하는 거예요.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뒤흔들어 놨고 민주주의를 뒤흔들어 놨어요.

법원행정처장님, 국회가 봉쇄됐어요. 그리고 이 국회라고 하는 기관은 봉쇄하면 안 되는 기관이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국회를 봉쇄하고 이 기관을 혼들어 댔다면 이것은 국현문란이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지적, 의문 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논의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국현문란입니다. 국현문란은 벌써 판례가 다 있었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그 미필적 의도만 있어도 국현문란입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예뻐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장 직무 정지시켜야 된다고 용기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 하시는 겁니까?

법제처장님, 내가 이야기했지요. 가장 가까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만 체포되고 감옥 가는 겁니까? 함께한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라고.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영상 틀어 줄 수 있습니까? 영상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저기는 한동훈 대표 바로 옆방인 정책위의장실이에요. 저기에 숨어 있었고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려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그 시간에 우리 당에서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있어 야지만 체포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체포조를 보낼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위반해 그런 것 아니겠느냐.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윤석열, 저런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현재사무처장님,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탄핵 사유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탄핵 사유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한 게 현재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된 탄핵 사유예요.

지금 바로 나온 속보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의 홍장원 1차장에게 한동훈 체포를 지시했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홍장원 1차장이 체포를 거부하자 경질되었다고 지금 속보로 나왔어요. 국정원 1차장조차 이런 걸 거부하는데 법무부장관은 뭐 하는 겁니까?

감사원장직무대행님, 이런 비상계엄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게 한동훈 체포를 지시한 것 이것 제대로 된 지시입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설마 그랬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설마 그랬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설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직무 정지해야 된다고 최고위에서 발표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재명을 체포해라, 우원식을 체포해라 그리고 국회가 못 열리게 국회부의장까지 체포해라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동훈을 체포해라, 그래서 이들이 체포하기 위해서 수갑까지 갖고 왔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요? 민주당에 경고하기 위해 그랬다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비인간적이고 반인간적이고, 이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반인륜적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바로 체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내란수괴들 바로 체포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서영교 위원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 비상계엄령 내란의 두 번째 수괴 김용현이 출국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듣고 출국금지를 요구한 거예요. 일찌감치 출국금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그리고 관계자들 모두 다, 방첩사령관 그리고 계엄사령관 등등 모두 다 출국금지 해야 합니다. 이것도 뭉그적거리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수사기관에서 다들 요청이 오면 저희 법무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법무부장관은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런데 그 절차를…… 위원님, 아무리 그러셔도 수사기관에서 요청하게 돼 있고……

○서영교 위원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공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공범이라고 말씀하신 표현은 과한데 저희들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신 거예요. 총을 들고 실탄을 장착하고 온 그 총구를 막아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왜 제대로 된 용기가 없고 제대로 된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지 제가 오늘 의문을 제기하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법원행정처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한테 여당 당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권한이 없는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도 지금 쉽게 답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위원장대리 김승원 아니, 이것은 답을 해 주셔야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알기로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김승원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대통령이 어떻게 여당 당대표를 체포하라고 국정원 1차장한테 지시를 합니까? 쳐장님도 말씀하세요. 그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도저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이신데요,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윤석열 내란수괴의 목적은 국회 해산입니다. 검사 윤석열의 꿈 ‘내가 육사 갔으면 쿠데타 했을 것이다’, 드디어 시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요. 윤석열은 지금, 제가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윤석열은 지금 이판사판으로 나올 것입니다. 제가 검사 윤석열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2차 계엄이 매우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모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선관위를 점령해서 22대 국회 선거를 불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야당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국회를 해산시켜 자기 뜻에 맞는 국회로 재편하려고 했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했습니다.

내란, 내란이 무엇인가 하면 국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저런 폭동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란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 못 하신다고 여기 나와 계시는 공무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비겁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저것은 내란입니다.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저것은 폭동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윤석열 긴급발표 시작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4분 뒤인 27분입니다. 계엄 발표 3분 뒤에 사복 차림의 방첩사 요원들은 선관위에 진입했습니다. 선관위는 비상계엄 대상이 아니에요. 방첩사 예하부대인 정보보호단 소속 핵심 조직의 IT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요원들이 선관위를 점거했고 그 뒤에 297명의—국회에 온 것보다 더 많이 갔어요—특전사 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계엄 발령 이전부터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명령을 받고 계엄사령관이 아니라 충암고 출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별도 라인 지시로 이들을 선관위에 배치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조에도 여인형의 방첩부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 280명이 국회를 점거 침투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사전 모의해서 방첩사 요원들을 선관위와 국회에 보내 지난 국회의원 총선을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무력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했던 국회 해산 작전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목전에 다가오자 감옥에 가기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참혹했던 문제들을 번번이 좌절시켰던 야당과 언론, 노동자, 시민, 의사들까지 자신이 불편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했던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윤석열 내란의 정범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모의했던 김용현, 이상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박성재, 김영호, 조태열, 송미령, 최상목, 조규홍, 오영주, 모두 내란의 정범들입니다.

윤석열과 모의하고 실행했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군인들은 모두 형량이 총살밖에 없는 국가반란 정범들입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면서 계엄군이 출동한 것을 방기했던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국가반란, 군사반란의 정범들입니다. 이 대상 범죄들은 총살형밖에 없습니다.

헌법기관을 통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던 조지호, 김봉식, 오부명, 주진우, 박현수 등도 내란의 정범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부르지만 나머지는 내란의 동조자, 부역자, 증인으로 부르시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내란과 국가반란의 정범들입니다.

법무부장관님, 국무회의 심의에 참석하셨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은정 위원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 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다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박은정 위원** 장관님께서 법률……

○**법무부장관 박성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 위원** 그 얘기는 아까 하셨어요.

장관님께서는 법무부장관이시고 대통령의 법무 참모이십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에 대해서 법무 참모로서 반드시 자문하시고 조언하시고 잘못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법무부장관이 있는 이유입니다. 법무부장관이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만일에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그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법한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윤석열은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검찰청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장관님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군대, 군사 관계자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계엄 문건 작성 관련해서 수사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서울동부지검에 구성이 됐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때 제가 밖에 있어서 어떻게 구성됐는지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박은정 위원** 당시에 군대 관계자들, 군검찰 등 관련자들이 그 수사본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군사반란이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은 직권남용밖에 수사를 못 해요.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이 수사를 같이 해야 되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군 관계자들도 같이 들어가서 총살형밖에 없는 이 군사반란에 대해서, 계엄사령관의 지휘도 없이 민간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어떻게 군대를 동원하고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장관님, 특별수사본부가 빨리 조속하게 구성이 돼서 대통령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이 내란의 정범들을 모두 긴급 체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책임을 지도록 그래서 처단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께서 만드신 저 표에 의하면 제가 정범이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박은정 위원**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검찰에서 적정한 조치를 해서 수사에 필요한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란의 정범이라든지 저런 표현은 위원님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장관님, 어제 안가 회동에서 제2차 계엄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한 적 없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래** 법무부장관님,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처신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위원장 정철래**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4·19 때 3·15 부정선거로 최인규 내무부장관이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항쟁, 결국은 전두환, 노태우도 다 중형에 처해지고 처벌받았습니다.

지금 순간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단죄받을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급변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비상계엄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지 못한, 입 다물고 있었던 국무위원들은 다 실정법 위반이 됩니다. 마치 불만 섞인 목소리로 ‘제가 거기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차라리 솔직하게 양심 고백하고 ‘내가 그때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되돌리고 싶다. 후회한다’ 이런 발언이 본인의 신상에도 좋지 않을까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충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토론하세요.

○**박지원 위원**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은 우리 법사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방위, 행안위를 주시했습니다. 서영교·박은정, 두 위원님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실을 적시하면서 구체적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방차관, 지금 제2의 비상계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부대 일부를 이번 일요일까지 대기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모르고 있고, 그런 사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국방차관이 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는 지금 현재 부재 중인 장관 직무대리로 있고……

○**박지원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모른다 이거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지원 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러한 명령이 하달돼서 일부 군부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최고의 시사……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박지원 위원** 잠깐, 조용히 해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이 뭘 쫑알쫑알거려, 가만히 있어!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야.

미국의 포린 폴리시 부편집장이 직접 기사를 써서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쿠데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피할 수 없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미 국무성의 블링컨 장관이나 캠벨 부장관이나 또 미 백악관 NSC의 제이크 설리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박지원 위원** 검찰에서 가로늦게 잘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장직무대행!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예.

○**박지원 위원**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했으면 윤석열 탄핵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을 탄핵했다고 생각하는데 직무대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감사원 구성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좋습니다.

법무장관, 지금 말이지요 경찰이, 국수본부장이 김용현, 린용현 될 뻔했어요. 국방장관 런종섭에 이어서 런용현을 출국 금지했는데 검찰총장이 검찰에서도 출국 금지했다.

박근혜 탄핵이 성공한 것은 검찰이 국민 편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그 주역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검찰이 윤건희 편에서 충성하다가 이런 사태가 나니까 돌변하고 있는데, 그 돌변도 좋습니다. 검찰이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되고 내란수괴인 윤석열·김용현을 즉각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수사팀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선……

○박지원 위원 빠져나가세요. 빠져나가는 것 좋아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닙니다. 우선……

○박지원 위원 보세요. 얼마나 큰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한동훈을 체포해라 하니까 국정원 1차장이 ‘못 합니다’라고 하니까 경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 조태용 원장도 그런 사실 없다 하는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거하면 홍장원 1차장이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해서 알려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직무 정지해야 된다’.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시에 의총을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중진 의원들이 만약에 탄핵하면 박근혜·문재인 학습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 그래서 탄핵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구국의 차원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의로운 그런 결단을 해 달라,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든 외신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K-민주주의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젊은 군인, 젊은 경찰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

내란을 방조하지 마세요. 다 법정에 섭니다. 12·12 사태 때 어떤 결과가 있었던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장원 1차장처럼 명령을 거부하고 사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의롭게 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두에 정박된 배에서 쥐 떼들이 갑자기 뛰어내리면 그 배는 나가서 침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쥐가 되세요. 국민을 위해서 쥐가 되세요. 괜히 옹호하고 같이 부화뇌동했다가는 내란죄로 함께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 소위 유튜버들 그 사람들이 선관위에 계엄군이 가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똑똑히 들으라고 그러세요.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훌륭한 국민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란죄 아니라고 하는 분들, 12·12 쿠데타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것을 보시라고 하세요.

저는 법원행정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바로 서야 이제 나라가 섭니다. 어떤 경우에도 검찰처럼, 감사원처럼 그런 짓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이 한남동 공관만 제대로 감사를 했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예.

○박지원 위원 탄핵이 발의됐겠어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만 제대로 수사를 했어도 이런 사태가 왔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감사원장 탄핵했다고, 서울 중앙지검장 탄핵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누가 종북 세력이에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다, 북한을 이롭게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공직자들 절대 부화뇌동하지 마세요. 국민 편에서세요. 만약에 동조했다가는 내란죄로 다 처벌받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약간 비겁했지만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한테 패싱당해 가지고 당하고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바로 서 주길 바랍니다.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그때 회의에서 네 가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결과는 저희들이 파견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일관은 저희들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잣을 때 12시 50분이었고 그리고 1시에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그 뒤로 사실상 저희들 회의는 끝난 셈이고, 다만 일선에서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불안을 느껴서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이 안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게시글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남아 있었던 것뿐이고 한 2시 조금 지나서 저희들이 다 귀가를 하고 종료된 걸로 봤습니다. 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사건도 있고 또 소추 의결을 위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이 정한 업무에 대해서, 헌법이 정한 정신에 따라서 충실히 훈들림 없이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역사는 국민들이 씁니다.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이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서고 시간을 벌어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없었으면 국회의원들 다 잡혀가고 오늘 법사위도 열리지 못했을 겁니다.

보도에 의하면 과천의 모처에 국회의원들을 다 구금하고 국회를 유린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위헌·불법적인 쿠데타 세력은 올바른 역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써 내려가는 것이 정의의 올바른 역사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반역 무리의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들도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애국과 매국이 한 번 손 놓으면 못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국가도 국민도 개인도 앞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매우 엄중한 시기라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긴급 의총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추후에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국방위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어 국방부차관이 국방위에 출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방부차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특전사령관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수방사령관도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거부했다라는 요지의 중언이 있었고. 국정원 제1차장으로부터는, ‘이번 기회에 짹 다 잡아들이라, 무선보안 1000번으로부터 결려 온 대통령님 전화’ 이런 한겨레 신문 기사 제목도 있고. 국정원 홍장원 1차장에 의하면 방첩사 검거 대상으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저도 포함되어 있네요.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권순일 등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사들을 체포해 구금하라는 것도 있었고 실제로 실탄을 장전해서 국회로 진입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탄은 안 된다 이런 거부했다는 중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란에 해당되고 군사반란에 해당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방부차관님!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긴급 브리핑하는 것 들었습니다. ‘제2의 계엄은 없다’ 그렇게 브리핑한 것 맞지요?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방첩사령관도 빨리 직위 해제하세요.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지금 즉시 하세요. 국민들이 제2의 비상계엄이 또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데 주요 동원 대상이었던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은 양심선언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지시가 와도 따르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데 방첩사령관만 지금 입을 닫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방첩사령관 지금 즉시 직위 해제해야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좀 걱정하는 것을 덜어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판단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직위 조치에 대한 것을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즉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지금 검찰에서 특수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하는데 제가 점심 시간에 쭉 알아보니까 검찰을 누가 믿느냐, 또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긴급하게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아요. 어차피 이것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 법안1소위로 넘긴 내란죄를 특검을 통해 수사할 수 있는 수사요구안 이것이 조만간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도 경거망동하면 안 되고 사건을 은폐, 조작 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명심 하시고.

장관께서 제대로 수사를 하리라고 믿는 국민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그런 의도를 갖고 한다면 당장 중지시키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고발을 경찰에다가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예.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래서 저 수사를 어디서 하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저 체제를 꾸리고 하는 데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것은 오전에 답변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좀 발표되고 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찰이 특수수사본부 꾸려 가지고 뭘 어찌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검찰이 뭐 한다고 그러면 콩으로 메주를 쌈다고 해도 이제 안 믿어요. 예전의 경험으로 봐서 이것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박규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방부차관한테 질의하실 분 먼저 손 들어 보세요.

국방부차관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차관한테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규택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국방부차관은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장님, 국방부차관입니다.

지금 국방위가 취소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요? 상황이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지난번에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누구든지 잘못된 계엄이었다 여기에 다 뜻을 같이할 것이고,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공포에 떨었을 그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여야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무사히 비상계엄해제요구안에

대해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마음은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다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국회는 당연히 국민을 대표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문할 것은 질문해야겠습니다마는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재판기관이 아닙니다. 엄연히 그 권한은, 재판할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것이고 수사할 권한은 군에서 하든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든 또 특검에서 하든 그 부분은 수사하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국회가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빠르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수사를 하든 내란죄에 대한 처벌은 법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여기 계시지만 당연히 법원행정처장님이 국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어떠한 죄가 성립한다 이런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입니다. 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내란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서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수사본부를 구성한 상황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뉴스에 그렇게 나와서, 저도 직접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지금 내란죄 수사라고 하는 것은 국운이 걸린 수사입니다. 그 수사 하는 데 있어서 한 치라도 늦춤이 없도록, 그리고 그게 검찰의 수사 권한이나 경찰의 수사 권한이냐 그런 것을 지금 따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안의 엄중성에 비춰서 그것은 나중에 확인할 문제고 어쨌든 빨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챙겨 봐 주시고.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과 또 당연히 군의 일부가 가담했기 때문에 군 수사기관도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생각 어때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위원장님과 같은 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 검찰에서 잘 알아서 중심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규택 위원**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차관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은 장관직무대행 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신임 국방부장관이 국회청문회를 거쳐서 정식적인 업무 수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곽규택 위원** 그런데 지금 내란죄의 협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현직 군인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현직 군인이 내란죄에 가담한 것으로 수사를 할 때는 군사경찰 그리고

군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맞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그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하게 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러합니다.

○곽규택 위원 일단 재판은 나중에 기소된 이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수사하는 것 자체는 군사경찰, 군검찰 그리고 검찰, 경찰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차관님 그렇게 지금 한다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발표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 합동수사본부에 군검찰을 파견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서 같이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그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압수수색이라든지 체포라든지 강제수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충돌이 안 생기도록 신변 경호라든지 집행을 위해서 군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군검찰의 수사 협조에 적극 응할 수 있도록 일단 지시사항을 내려 놨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군과 또 검찰, 경찰이 신속한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방향을 잘 잡아서 적극적인 지원과 또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설특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우리 경험상 중요한 사안마다 특별검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늘 정치적인 논란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수사가 계속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검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정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상설특검화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야 간의 합의로 상설특검을 만들어 놨던 것이고.

제일 중요한 조항인 상설특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위원회의 구성은 7명 추천위원으로 하면서 4명을 국회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야 동수로 2명씩 하도록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직전에 야당 4명으로 그것을 바꿔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그러면 여당이 추천하는 행위는 차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런 신속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상설특검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결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상설특검에 있어서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추천하는 조항으로 다시 되돌리신다면 상설특검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빨리 지금 현재 군과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서 또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상설특검으로 하자는 거였지 찬성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특검을 안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부역자들 처형하고 처단했던 프랑스의 경우 거기에 부역했던 세력들은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를 범했기 때문에 반민특위 같은 것이 좌절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특검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윤석열 정권에 동조하거나 부역했던 자들은 어떠한 기회도……

○**유상범 위원** 부역이라니요? 뭔 말을 그렇게 해? 지금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조배숙 위원** 그것은 너무 심하신 말씀 아니에요? 아니, 무슨 나치하고 비교해요? 프랑스하고 비교합니까?

○**곽규택 위원** 그 부역자를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태 위원** 부역을 안 했으면 되는 거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위원장 정청래** 부역하지 않았으면 발끈하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말을 그렇게 해 놓고서는 발끈하지 말라는 소리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규정 지어 놓고!

○**위원장 정청래**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자들과 윤석열 부역 세력들은 수사나 특검이나 그것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 자들은 다 부역자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지 뭔 부역자야?

○**장경태 위원** 비상계엄 선포 시에 국회의원이 본청에 있어야지 당사에 있었던 건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 국회 비상계획 보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할 때 투표하지 않은 자들, 부역자라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안 들어왔습니까, 국회에?

○**박준태 위원** 뭘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유상범 위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들어왔어요!

○**곽규택 위원** 그러면 야당 의원 18명은 뭐예요?

○**박준태 위원** 왜 우리 들어올 때까지 안 기다렸어요? 왜!

○**유상범 위원** 여당 의원 18명 들어간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들어갈 수 없어서 못 들어간 거요.

○**장경태 위원** 그러면 18명 어떻게 들어왔어요? 저희는 어떻게 들어왔고?

○**위원장 정청래** 이럴 때는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박준태 위원** 위원장도 말을 아껴요!

○**유상범 위원**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요!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 결국은 확대된 특검으로 이번 내란 수괴·공범·정범·방조범 다 법정에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의 준엄함대로 사형, 무기, 징역 7년·5년 다 선고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서나 화해한다는 둥 하면서 사면 이런 것도 아마 당분간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뭘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지금 하고 있는 검찰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 어쩐다 이렇게 마치 하려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는데 국민들은 속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결국은 특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긴급하게 제가 또 국방차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방첩사 요원들이 사복 입고 들어온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지금 현재 상태는 확인하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확인하세요. 다 내보내세요.

지금 국방부에서 나와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흥창식**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당장 국방부에서는 방첩사 요원 중에 사복 입고 국회에서 암약하고 있는 자들 다 나가라고 하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확인해서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지금 그런 첨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빨리 방첩사령관 직위 해제하는 게 좋을 겁니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꽈규택 위원 다음에 김용민, 주진우, 두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너뛰고 박군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군택 위원** 행정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엄군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선관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세 개의 헌법기관 상대로 왜 그런 관심을 갖거나 점령을 하고 무력을 사용했을까? 세 가지 기관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는 정부 여당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선관위는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문제 삼을 만한 뭔가 자료가 있다고 믿어지는 곳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법부는 야당 대표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세 개의 헌법기관을 상대로 이런 액션을 벌였던 것은 국회의 기능, 야당의 기능,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의 기능을 참절하겠다는 이런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수의 많은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장님은 그 시각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당시에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그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저희들 입장은 말씀드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군택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처장님의 말씀은 법원에 몸을 담고 계시고 사법부의 위상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하시지만 동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입장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님들 다수는 지금 마음속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도부 중 일부 의원들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범죄를 말려야 할 입장의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을 방치하고 묵인하면 그것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일반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국회의원은 헌법상 정부를 견제해야 하고, 특히 국회가 점령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 내란 범죄를 막기 위해서 헌법상 부여되었던 비상계엄해제요구권이라는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일부러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란죄의 공범 내지는 방조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헌법기관에 몸담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임해야 된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저는 평소에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싸울 때 잘 소리를 안 지릅니다. 성격상 그게 맞지 않기도 하지만 여당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언젠가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마음을 함께해 줄 분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저는 소리를 잘 못 지르는데 이번에 어쨌든 함께해 주셨던 열여덟 분의 여당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법무부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박균택 위원** 노자가 얘기했던 지도자, 군주상에 대해서 가장 하급의 리더가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군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운영할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는 것 같다는 확인을 시켜 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신들도 표현을 짐잖게 하지만 내용을 보면 거의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법무부장관님께서 대통령이 직접 자진 사퇴를 하도록 한번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장관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 있는 동안에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도 시시각각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가, 어떤 조치가 있을지 저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박균택 위원**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했는데 국민들이 그 수사 의지를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경찰도 수사를 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가 나섰지만 경찰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성근 해병 사단장이 수중수색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그런 결정을 내렸었고, 전직 대통령의 딸 음주운전 사건을 가지고 아주 잔인무도한 이런 행태를 벌였습니다. 국민

이 완벽하게 믿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民間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방안이 어떨까. 특검이 들어오기 전까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서로 상호 협력을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고 또 상호 감시를 통해서 국민들이 불신하는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 이것을 서로 보증해주는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뉴스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지금 합동수사본부를 그 체제로 꾸리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직접 보고를 받은 내용은 아니고요. 그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관이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들로서는 늘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신이 누적될까 봐 굉장히 고민도 하고 위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 부분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또 궁리를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수사팀에서 잘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이 지금은 저보다 상황 보고를 적게 받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올라오는 보고라고 할까요, 첨보라고 할까요, 대통령이 지금 국회로 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서강대교도 통제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더 깜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국회로 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법사위는 정회하는 것으로 하고,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3시에 의총도 하고 그러는데 법사위는 계속 진행을 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당화되어서도 안 되지요. 책임 있는 분들의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수사 대상인 사람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질서 있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노정되지 않도록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준태 위원** 오전에 법원이 계엄 선포 당시에 내부에서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법부가 계엄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될 상황인지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준태 위원** 혹시 당시에 어떤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행스럽게도 결론 내리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를 했고 저희들이 보는 바에 따르면 대통령님께서는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에 대해서는 헌법상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황이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박준태 위원** 짧은 시간 동안에 각급 기관이—법원뿐만 아니라—특정한 결론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어떤 설부른 판단이,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결정이 오히려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의 과정 중에 우리 국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해제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처장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답변을 주신 게 맞을까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국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국회의장께서 여러 가지 시급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일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끝까지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해서 최종적인 해제 결의까지 이끌어 낸 그 과정이 저희들에게 큰 시사점을 줬습니다.

○**박준태 위원** 안정된 사법부의 운영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법원 구성원들의 동요가 없도록 처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준태 위원** 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계엄 사태 이후에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법무부가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더 큰 사회 혼란이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후속 조치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법무부 업무가 하나도 결함이 없이 수행되도록 법무부 업무 전체를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부분은, 검찰 부분은 검찰에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를 공범이라고 말씀을 하고 내란이라고 단죄를 막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과하다고 싶지만 검찰 수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고 지원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많은 분들이 질책을 달게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도 또 국무위원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될 숙명이 있는데 혼들림 없이 제 위치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직에 연연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만둘 때까지 통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박지원 위원** 오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회담은 한동훈 대표가 건

의한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로 오셔서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해서 임기 1년 단축 개헌안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의 국민,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 사퇴한다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동훈 대표가 국민 편에 서서 정의롭게 탄핵에 동참한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저지하도록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위원들도 나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저도 지금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지금 박지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임기 단축 개헌을 국회에서 말하려고 오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청에서 대통령의 출입을 막고자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긴급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박지원 위원께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비상계엄 이전 상황과 완전히다릅니다.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내놓는 그 어떠한 태협안도 수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럴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러할진대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탄핵하고 내란죄로 수사받고 감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윤석열 내란수괴……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어떠한 태협안도 민주당은 받기 어렵고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동훈 대표도 이 순간적인 판단, 순간 판단을 잘 하셔야 본인도 본인의 지위가 유지되든가 같이 처벌되든가 같이 감옥 가든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지금 2층에, 대통령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비상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대통령 출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도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시간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계엄에 대해서 계엄 해제권을 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을 국회로 출동시켰고 본청에 진입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국헌문란행위입니다. 또 선관위에 군을 진입시켰습니다. 또 법원에 연락관을 파견하라고 요구하면서 사법권의 일부를 정지시키려고 착수했습니다. 명백히 국헌문란행위입니다.

폭동에 대해서 일부가 ‘폭동이 아니지 않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면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평시에, 평온한 사회에서 비상계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언해서 군을 출동했다는 자체가 폭동입니다. 그 이상 더 큰 폭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란이 명백한데 내란이 아니라고 말하는 법률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법률가가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법률가들의, 기관·단체들이 다 성명서를 내면서 반헌법 내란이라고 주장들을 했는데요. 대한법학교수회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과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킨 중대한 직권남용행위’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반헌법적으로 이를 선포했다.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모두 위헌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민변은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위헌, 위법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지방변호사회도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전북지방변호사회, 충북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등등입니다. 아마 확인해 보면 더 있을 겁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 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비상계엄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한 위헌적 행위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실로 개탄스러운 폭거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서울대 로스쿨 일동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권의 친위 쿠데타로서 명백한 위헌이다. 입법부를 무력으로 압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계엄은 곧 내란이다’. 내란죄 논란은,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법률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기꾼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에 동의해 주신 국민의힘 소속 열여덟 분의 국회의원에게 감사와 경의를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위법이고 위헌이기 때문에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고 의견일치를 봤으니까 그러면 논리 필연적으로 위헌·위법의 쿠데타를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헌정이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탄핵 절차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신속히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여덟 분이 나셨던 그 명예로운 협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란죄 수사 부분은 지금 검찰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하겠다고 하지만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그 명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했습니다. 진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초기 증거를 확보하고 방첩사령관 여인형과 김용현 등을 긴급 체포하는 것을 할 수는 있으되 궁극적인 수사는 특검으로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무부장관님과 법제처장님이 나오셨는데, 행안부장관과 3인이 14일 날 회동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아, 3인 이상이—행안부장관이 ‘내란죄 표현은 신중해야 된다.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법무부장관도 동일한 취지의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 자리에서 논의된 합의사항 아닌가

싶거든요.

법무부장관님과 법제처장님은 이 말이 세 분 이상이 모여서 논의한 내용인지, 그날 어떤 내용의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검찰총장이 그다음에 경찰 국수본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게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행안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짜고치는 행동들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모여서 뭘 논의하고 입을 맞춘 것 아닌가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이상민 장관이 말한 거랑 저랑 뭐가 비슷하다고 하셨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초반에 저희 야당 위원들이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표현에 동의를 못 하셨거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부분은, 내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혐의를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포함돼 있는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맞는 입장인데, 하여튼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수사팀은 정말이지 제가 지금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법제처장님.

○법제처장 이완규 무슨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요. 무슨 대책을 논의하려면 제가 뭘 알아야 저도 무슨 말을 할 것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는데 무슨 대책을 논의하겠습니까?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법원 입장도 들을 겸 한 가지 잠깐 확인 좀 할게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밝힌 체포 대상 명단에 보면, 저는 처음에는 그냥 국회의원들, 정치인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 방송인…… 그다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사법부가 왜 여기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도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그 이름을 봤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위원장 정청래 아니, 이게 사실로 보이고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홍장원 국정원 1차장만 지금 중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전사령관이든 수방사령관이든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까지 진입해서 다 끌어내라, 체포해라, 그리고 방첩사 시설에 구금해라, 이런 것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도 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가늠이 안 갑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저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전 대법원장, 아무리 퇴임했어도 전 대법원장이고 전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사법부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지 법원의 입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입장 표명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도 조금 전에 들은 바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런 것이나 이런 경우는 즉각즉각 법원의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일단 이분들이 무슨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너무 뜯금없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권순일 전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와 관련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뭐 유일하게 연결을 짓자면 그 정도일 텐데 저도 하여튼 영문을 모르는 상황이라서 조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방금 국회에 윤석열 용산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라는 말도 쓰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이 국회에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란 혐의자, 내란수괴가 국회에 오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국회의원들 여러분께서 막기 위해서 나갔다가 우리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무서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회차해서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방사령관 말씀하셨지만 군에서도 양심적인 군인들이 반성을 하고 또 느끼고 국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소신 있게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건, 윤석열 내란 사건, 참으로 참담합니다. 어떻게 수십 년간 검사, 법치,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은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놓고도 ‘야당을 겁주기 위해서 한번 해 봤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국회의원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밤 11시, 12시에 경찰이 못 들어가게 막아서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경찰이 쫓아오는데 가방을 메고 그 담을 뛰어넘어 보십시오. 안 다친 것만 해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민들께서 150석을 채워야 비상계엄 해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을 들어올려서 보내 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오전에도 나왔지만 K-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숙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장관님들, 쳐장님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국민들께서 믿고 소신 있는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사전에 국무회의 가서 반대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다들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고 그날 참

석.....

○**이성윤 위원** 그러면 사후에 다시 법무부에 와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류혁 감찰관이 사직을 했잖아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류혁 감찰관은 제가 사무실.....

○**이성윤 위원** 그때 장관님은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뭐에 대해서 말씀.....

○**이성윤 위원** 비상계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사실 외에 누구.....

○**이성윤 위원** 아니, 그런 말씀도 국민들한테 못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께 정의와 법을,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취임사가 그거 아니잖아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법원 계시판에 어떤 법관이 ‘윤석열은 대통령도 아닙니다. 윤석열은 대통령도 아니고 이건 쿠데타입니다. 명백한 우리 지도부의, 대법관님을 포함한 법원 지휘부의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이런 글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입장을 표명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의지 표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국방부차관님, 본인이 관여 안 했다 해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후조치라도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방조법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개입하지 마라’ 성명도 발표하고 담화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사과한다고 하셨지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까 윤석열이 국회에 온다고 해서 저희가 막을 때 많은 언론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윤석열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제 믿을 수가 없다, 국방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다.

국방부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보직해임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렇게 보직 해임하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두문불출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지금 없애고 있답니다. 증거 보전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직무 배제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고 아침에 보고를 드렸고,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이성윤 위원** 지금도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시를 해서 지금 직무 배제를 시켰습니다. 명령을 내렸고요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성윤 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전하고 하나도, 일체 자료를 폐기하지 마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거 지시했습니다. 오후에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13시 30분에 관련해서 관련된 자료에 대한 폐기 금지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차관님, 윤석열은 현재 탄핵심판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탄핵심판 피의자입니다. 탄핵 피의자 신분인데 이런 윤석열이 어떤 윤석열이 어떤 지시를 해도 따르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군과 또 국민만을 보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나오셔서 분노해야 됩니다.

현재 처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명백한 쿠데타라고, 내란죄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결기도 없이 어떻게 위법한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고 어떻게 최후의 보루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대법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윤석열 검찰정권에 부역하지 마시라고. 수도 없이 말씀했는데 이번 12·3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의 권한을 침탈하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민들이 법원을 믿겠습니까?

정말 어제오늘 이렇게 반성하고 참회하는 군인들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면서 다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반성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반성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오히려 원칙, 사건 이런 얘기만 얘기합니다. 여기는 재판정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을 지켜 주길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는 제2의 계엄 없습니다. 여러분들 법적으로 우리 법원이, 법무부가, 현법재판소가 반드시 지켜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한결같이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그런 결기 없이 어떻게 비상 상황에서 이 나라를 지켜 내고 국민들을 지켜 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너무나 한심합니다. 저도 검찰에 30년 있었지만 검찰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장관님! 여기 오셔서, 정의를 실현하시겠다고 법무부에 오셨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장관님께서 명백히 선언해 주십시오. 법무부가 이제는, 윤석열의 어떤 명령도 부당하다, 탄핵 피의자다, 그래서 정말 정의를 지키고 국민들을 지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검찰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장관님이 선언하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이성윤 위원 장관님이 법무·검찰의 최고책임자 아닙니까? 왜 최고책임자가 그런 말을 결기 있게 못 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제가 뭐라고 하면 다 또 다른 오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성윤 위원 장관님, 여기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법을 수호하는 장관이 법을 수호하겠다, 지키겠다, 정의를 지키겠다 이런 맹세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K-민주주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성숙한 분들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당연히 그렇게 검찰에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선언을 해 주십시오, 본인이.

법원행정처장님도 선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도 선언을 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이런 공직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관대행을 하고 있으면 장관의 직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방금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을 직무 배제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언제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좀 전에 지시를 했고 방금 한 10분 전에 그 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번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3대 축,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이렇게 있는데 방첩사령관은 직무를 배제한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세 사령관 전부 다 직무 배제하고 분리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3명 다 직무 배제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직무 배제라 하면,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일단 보직에서 그 직책에 부여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분리돼서 별도로 있게 됩니다. 그 해당되는 사령관의 직책은 제가 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으로 지정을 해서 보직명령을 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쉽게 말씀드리면 방첩사령관은 방첩사령관이 이제 아닌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방첩사령관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 아닌 거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방첩사에 출근도 못 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별도의 공간에 아마 분리될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특전사·수방사 다 마찬가지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는 게, 707특임단장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정청래 그 소속 계엄군들이 국회에 난입할 때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행위를 하고 이를 막아서는 시민들과 우리 당직자, 보좌관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했고, 실제로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중에 결혼식을 앞두고 얼굴에 상처가 나서 일곱 바늘을 꿰맸대요. 지금 결혼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피해들이 있거든요. 그 피해를 일으킨 계엄군이 707특임단 소속이라는 거예요. 이 707특임단장도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현재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 특임단 밑의 병력들을 투입하도록 명령한 사람들에 대한 그것이 가장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고 조치해야 되는 거라 1명의 사령관을 우선 조치를 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제 병력이 들어와서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국방부가 별도로 그 진상을 명확히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진상조사를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아마 다음주부터는 실제로 움직였던 부대들의 실상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면 그 이후에 사후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는 피해 사례를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과격한 폭력행위를 한 계엄군 자체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명령한 사람은 물론이겠습니다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희가 확인 과정에서 그런 게 나오면 거기에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어쨌든 내란 행위에 과도하게 부역한 자들 아니에요? 이런 자들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위원 12월 3일 밤 10시 반경 갑자기 비상계엄이 발령되었다는 그 뉴스를 보고 저도 바로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국회로 달려오면서 ‘아, 내가 체포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때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정권이 국회의원들을 분명히 체포하고 잡아가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위낙 다급해서 국회로 저도 간신히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 계엄이 국회를 장악함으로써 성공했다면 사후적으로 보니까 아마 저는 방첩사에 끌려가서, 거기 100명이 넘는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글쎄요 고문까지 당했을 것 같습니다. 전향서를 쓰게 한다든가 윤석열 정권…… 이거지요. 포고령에 있는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꾀하는 세력이 돼 가지고 이것 전향하겠다라는 그것을 쓰고 고문을 받은 다음에야 겨우 헛빛을 보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위원님들 계시고 국민의힘 위원들도 계시지만 다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도 변호사 하면서 국민의 4대 의무를 다 이행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왜 내가 윤석열 씨에게 반국가 세력으로 찍혔을까,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그렇게 보였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포고령 보시면 국회와 지방의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계엄을 대비해서 만든 문건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참고자료 그다음에 대비계획 세부자료 이건데 그때도 국회를 막거나 통제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국회를 장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총칼로.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역사가 후퇴를 해도 이렇게 후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전두환 때도 그런 일을 안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수십 년을 후퇴시킬 수가 있습니까?

저희뿐만이겠습니까? 이 계획 별지를 보시면 스물한 가지의 단계별 포고령이라든가 훈령 같은 것들이 다 나옵니다. 윤석열 씨가 6번까지는 한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하고 대국민에게 담화 발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치활동 금지 그다음에 허위 선동 금지 그다음에 의료인들에게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엄포 등등 포고령 1호. 그다음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설치, 방첩사 즉 보안사령관을 그 대장으로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이 뭐냐 하면요 계엄군사법원 설치입니다.

처장님, 법원 공무원 파견 요청이 들어왔다 그랬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승원 위원 계엄군사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전 단계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집회·시위 예상지역 점령하라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30사단이라고 그래서 고양 일산에 있는 사단 병력을 국회로 파견하고 곳곳 주요 기관으로 파견 시켜서 점령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국방부차관님께서도 중장으로 전역하셨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30사단이 지금은 9사단이지 않습니까? 30사단 자리에 9사단이 지금 있지 않습니다, 백마부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 위치는 아니고 별도로, 30사단은 이제 해체돼서 없는 부대가 됐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렇지요. 30사단이 해체됐고 고양 일산에 백마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로부터 가장 가까운?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김승원 위원 백마부대의 1개 중대를 국회에다가 진입을 시켜서 탱크를 갖다가 주둔시키게 하고 국회의원들과 일반 시민들의 접근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 기획했던 일들이 이게 다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라고요. 그다음에 통금이

있어서 야간활동도 국민들이 못 할 것이고 아마 주가는 폭락하고 어마어마한 경제적 혼란과 그런 것이 돼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적인 피해를,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을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고성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지금 시나리오 보시면 국방부차관님, 이것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현재 12월 3일에 있었던 그것은, 대비계획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문건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저는 처음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할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는데, 그때부터 이것 이상하다라고 느껴서 지난번 국감에서도 김용현 국방부장관 테 비상계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무부에도, 아마 제가 검찰총장한테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2017년도 계엄 문건을 작성해서 내란 예비·음모를 했던 조현천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5년 만에 귀국을 합니다. 체포는 되었지만 3개월 후에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리고 내란 예비·음모,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부터 면죄부를 받고 기껏해야 징역 5년 이하인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됩니다. 저희에게 들어온 정보는 서부지검에서 그때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수사도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조현천에 대해서. 그러더니 면죄부를 줬습니다. 저는 이때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 따르는 군인들한테 ‘봐라, 조현천도 해외 도피하다가 우리가 다 불구속으로 만들어 주고 저것 집행유예로 끝날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사인을 주고 무모한 용기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서부지검이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조현천 사건을 그렇게 유야무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2023년 3월 달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그때부터 비상계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밀하고 계획적인 계엄이 아니라고요? 경고성에 그친 거라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공수, 3공수, 특전사 그리고 수방사 특임대 또 9사단까지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계획에 따라서 진주하려고 했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단호하게 현법을 수호하겠다, 국민을 지켜 드리겠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내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직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나온 월간중앙의 보도를 여과 없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싹 잡아들여” 윤석열의 전화, 미친놈이구나 싶었다”, 국정원 1차장의 폭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이렇게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거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이것이 사실이면…… 국정원에게 대공수사권을 부여하고 말고는 국회

소관 사항이지요? 법으로 해야 되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대통령이 절대왕정 시대의 왕입니까? 입법·행정·사법을 자기 마음대로 다 휘두를 수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국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법 개정까지, 본인이 이렇게 다 주겠다고 합니까? 이게 적어도 월권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을 개정한 후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국정원 제1차장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미친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 차장만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마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 대부분이 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정상이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들의 정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반국가 세력이라느니 무슨 소굴이라느니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왜 그러지, 믿지 않았어요.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살 떨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집에서 나오셔야 된다고, 피신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의 첫 반응이 ‘그것 딥페이크 아니에요?’ 이거였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 집을 나와서 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수행비서에게 바로 전화해서 집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곧바로 집을 빠져나와서 국회 담장을 제가 넘었습니다. 국회를 360도 뻥뻥 돌았는데 출입문을 다 봉쇄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회의장을 가야 된다, 빨리 이것을 해제 의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 후문 쪽 운동장 담을 제가 뛰어넘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수행비서도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았대요.

저 혼자 본청 앞까지 걸어오는데 그 길이가 굉장히 길었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엄군들이 본청 정문을 에워싸고 있으면 나는 체포를 당하러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청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비록 잡혀갈지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두려움과 분노, 치 떨림을 안고 본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88년 안기부에 연행돼서 읊지로, 이름도 알지 못하는 호텔 방에서 수돗물이 활활 틀어진 물고문의 위협 상태에서 팬티 바람으로 손수건,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4시간 동안 고문·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본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잡히더라도 가야 되겠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 오늘 증언을 보더라도 다 잡혀갈 뻔했어요. 특히 저는 체포 대상에도 포함이 돼 있네요. 잡혀가면 무작정 때렸을 거예요. 무작정 폭행했을 거예요. 왜? 기를 죽이려고. 속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저도 우원식 의장도 가자마자 아마 집단폭행을 당했을 겁니다. 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

국회의원들 그런 공포감이 있었지만 다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다 잡혀갈 뻔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위대한 국민들,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도 선조 왕은 도망갔지만 민중들, 조선의 백성들이 나라를 지켰고 일제강점기 때 먹물 든 학식 있는 고위 관료들 다 친일파 되고 나라를 팔아먹을 때 나라를 지켰던 것은 일반 백성들, 독립운동하던 분들이었고 4·19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반 시민들. 광주 5·18 때도, 전두환·노태우 군부 일당들이 광주를 학살할 때 광주를 지켰던 것도 일반 국민·시민들이었고 6월 항쟁 때도 호현철폐 독재타도, 이 나라를 구한 것이 일반 국민·시민들이었고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도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의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은 일반 시민들·국민들이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반 시민들·국민들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일반 시민·국민들이 몸으로 막아설 때 법무부장관,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법관을 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장, 이것은 위헌이라고 즉각 발표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말하기 좋아하는 헌법재판관들 다 뭐 하고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이것은 위헌이다. 즉시 중지해라’ 이렇게 성명 한 줄이라도 빨리 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보다 여러분들이 못하다는 겁니다. 더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에요?

1분 더 넣으세요.

오늘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대세가 기우니까 지금은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뭘 폭로하고 있고 하지만 명령을 거부했느냐 이거예요.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말을 갈아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국방부차관도 이제 와서 대세가 기우니까 이런 조치들을 하는 것 아니에요? 검찰, 그러니까 무슨 특수본 꾸린다 뭐 한다 하는 척하는 것 아니에요? 윤석열이 지금 펄펄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정말 솔직합시다. 역사와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고위 관료들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한마디씩 하세요.

법무부장관, 한 말씀 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이, 제가 공직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염두에 두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원행정처장도 한 말씀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일반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저 자신부터 제자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진짜 국민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헌법재판소도 한 말씀 하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상황의 심각성과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권한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제처장님도 한 말씀 하세요.

○**법제처장 이완규** 계엄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를 했고 그 해제 요구에 따라서 해제가 돼서 일단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행정기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이 동요하지 않게 잘 다독이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역시 반성과 사과는 없으시군요.

○**법제처장 이완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오동운 공수처장도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한 말씀 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헌정 질서 중단을 회복시켜 준 국회의원님들과 국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수사로 말해 주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은석 감사원장대행도 한 말씀 하세요.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저희도 충격 속에 TV 중계를 지켜봤는데요.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용기가 오늘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선호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차관으로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 지도록 하고, 향후 새로운 장관이 부임하기 전에 다시 국방부, 우리 군을 가장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오늘 좀 어수선한 상태에서 법사위를 진행했는데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박지원 위원** 한 말씀만 더 합시다.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십시오.

3분 하세요.

○**이성윤 위원** 저도 한 말씀만, 1분씩만.....

○**전현희 위원** 한 번 더 해 주세요.

○**장경태 위원** 건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서영교 위원** 저희는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 국회가 하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해서 정회도 좀 하고 그랬는데,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하지 마시고요 짧게 3분 이내로 박지원 위원님 하시고 대표로 한두 분 하시고 그냥 끝낼까 합니다.

박지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다 주세요.

○**이성윤 위원** 자료 요구하려고요.

○**장경태 위원** 자료 요구 1분씩은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자료 요구는 1분씩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오늘 감사원장직무대리께서 나오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관저 이전 관련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전임 감사원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못 준다 이렇게 거부를 했고,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또 한편 이번 감사원장 탄핵 사유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직무대행께서 나오셨는데 이 자료 하나하고.

지난번에 감사원 직원들이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집단적인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자 그다음 해당 문건 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회의록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직무대리께서 돌아가셔서 그 두 회의록과……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자료 그리고 지난번에 탄핵 관련 집단행동 관련자 그다음 문건, 회의록 등 일체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은석 감사원장대행님, 감사원 회의록 제출은 저희가 위원회 의결로 한 거예요. 탄핵당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금까지 여야 합의를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국회법 어느 조항에도 여야 합의가 있을 때만 회의록을 준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자료제출은 위원회 의결로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내세요.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그런데 지금 들어서 답변하기가,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요.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일단 의결의 효력이 그때 종료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다시 의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번 감사원에게……

국회도 국회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절차대로 다시 할 테니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지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야 돼요. 아니면 지난번에 의결한 것이 유효하다라고 생각되면 하시고 아니면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의결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또 누가 하시겠습니까? 조금 아까 자료제출 요구 누가 하신다면서요.

○박지원 위원 다 그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아, 그거였습니까?

아까 자료제출 전현희 위원님이 요구…… 아까 누가 자료제출 요구하신다고 그랬지요? 이성윤 위원이 하신 걸로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다 하지 마시고 몇 분만 마무리 발언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위원님 3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저도 똑같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성윤 위원이 역시 야무지게, 똑똑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법무부차관 나오셨어요,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박성재 차관 지금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지원 위원** 법무부차관 다음 법사위에 꼭 나오시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법무부차관이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설명하면서 딱 한동훈 법무부장관 닮아 가지고 피의사실을 그렇게 국민 앞에 공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관 꼭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장관 박성재** 사실은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해충돌……

○ **박지원 위원** 아니 글쎄, 차관이 했으니까 차관 나오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 **박지원 위원** 법제처장님,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고 고시도 한 8년간 같이 공부했지요?

○ **법제처장 이완규** 고시를 같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대학 동기는 맞습니다.

○ **박지원 위원** 좋습니다.

지금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거론되는데 혹시 인사동의서 낸 적 있어요?

○ **법제처장 이완규** 이번 헌법재판관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 **박지원 위원** 대법관에는요?

○ **법제처장 이완규** 전에 대법관 할 때는 누가 천거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 연락 와 가지고 인사검증동의서를 낸 적은 있습니다. 물론 안 됐지만요.

○ **박지원 위원** 자격 있다고 생각하세요?

○ **법제처장 이완규** 글쎄요, 그건 제가……

○ **박지원 위원** 이런 때 법제처장은 법을 따져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으로 우리 국민이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말도 못 하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장으로서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생긴 경제적 손실을 파악해서 대통령께 배상하자 또는 대통령이 탄핵돼서 업무 정지되면 정부에서 검토할 용의 있으세요?

○ **법제처장 이완규** 그게 제 권한은 아니지만……

○ **박지원 위원** 권한이 아니라 법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 **법제처장 이완규** 글쎄요……

○ **박지원 위원**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시총이 1조 9000억 불밖에 안 돼요. 2조 달러가 안 돼요.

○ **법제처장 이완규**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미국의 엔비디아는 3조 달러예요,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도 2조 달러가 넘고 메타도 2조 달러가 넘어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중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총이 1조 9000억 불이란 말이에요. 국제경쟁력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이번 계엄으로 인해서 경제계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이런 것을 법제처에서 검토해서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겠어요?

○ **법제처장 이완규** 말씀하신 걸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또 누구 하시겠습니까?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내란의 밤 그날 당일 저는 감기에 걸려 가지고 집에서 약 먹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엄이다 아래 가지고 캄짝 놀라서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회 내에 장갑차 그리고 헬리콥터 그리고 계엄군들이 장악을 했고 에워싸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오다가 들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국회 들어가면 나는 체포당하고 구속당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국회에 달려가서 반드시 계엄을 저지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190명의 국회 의원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으로 국회로 달려왔을 거라 믿습니다. 그만큼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목숨까지 걸고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로 달려왔던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던져서, 바쳐서 지키려고 했던 그 민주주의였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사실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드는 생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했던 검찰이 이것을 수사해서 또 윤석열 무혐의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검찰이 갈대보다 더 빨리 눕네 이런 조롱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했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이미 부끄러워하고 부당한 명령 따르지 않은 양심 있는 정의로운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에 대해서, 단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가 있다 반성한 그런 검사는 없었습니다. 그런 검사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생각합니다. 당장 상설특검에 동의를 하시고 상설특검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검찰 손 떠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 제대로 하도록 협조를 해 주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에 좀 여쭙겠습니다.

감사원의 경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또 경찰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국무위원들이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여기에 대해 위법, 부당함이 있었는지에 대한 직무 감찰이 필요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징계나 수사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이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검찰에서 수사팀을

구성했다는 거는 이게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수사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여기서 또 이렇게 조사한다 뭐 한다 하면 오히려, 수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과연 이게 현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것인지 그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수사와 또 감찰과 정계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군부대에 대한 수사, 이런 내란죄 혐의 부분은 이미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밝힐 부분이고요. 여기에 부역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진상을 규명해서 정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수사 요청이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이 또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지금 저희 감사원에서 몇 년 내 해 온 업무 자세를 보면 당연히 그걸 할 거라고, 준비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전현희 위원 예, 그거 한번 검토해서……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그러나 당분간은 수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원이 이렇게 관여해서 한다는 것은 수사에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점까지는 고려해서 감사원에 대한 기대 수준을 좀 갖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직무대행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역할도 잘 고민해 보십시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석 감사원장대행한테, 감사원장대행이 아니라 서울고검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예.

○위원장 정청래 지금 또 특수본을, 서울고검장이 본부장을 맡는다고 하니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밝혔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 그렇습니다만 검찰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특검으로 가야 된다 하는 입장은 입장이고. 어쨌든 특검이 꾸려지기 전까지 검찰이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박선원 의원, 전 국정원 차장을 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에 의하면 방첩사가 지금 자료를 다 없애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 일고 있고 그러면 빨리 증거를 잡아야 되고 필요한 사람은 체포를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그러면 임시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찰·경찰·군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꾸려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즉각 해야 나중에 특검을 하더라도 그 자료라든가 이런 걸 넘기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런 합동수사본부, 특수수사본부가 아니라 합동수사본부를 지금 즉각 꾸리고 즉각 조치를 하고 나중에 특검이 되면 그걸 넘겨야 된다. 나중에 넘기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특수본이 아니라 합수본을 꾸려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서울고검장으로서 어떤 생각이세요?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저도 옛날에 합수본, 특수본 거기 관여해 봤는데요. 사실 지금 심우정 총장님이나 박세현 고검장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세도 바르고.

○위원장 정청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 **감사원장 권한대행 조은석** 예.

심우정 총장님이나 박세현 고검장님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세도 바르고, 또 판단을 잘 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소추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전조사를 통해서 판단이 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범위는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계된 범죄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란죄도 검찰의 수사 영역에 관련된 범죄로 수사 대상이 되는 하나의 행위에 연속된 것 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수사팀을 구성하고 착수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할 거라고 봅니다.

○ **위원장 정청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찰, 경찰, 군을 넣으면 서로 견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장난질을 못 할 거 아니냐, 또 경쟁심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특수본이냐 합수본이냐는 그 의미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감사원장 권한대행 조은석** 그게 아마 총장께서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수사팀에 또 다양한 구성원이 들어가게 되면 운용의 효율성에 여러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운용할 거라고 봅니다.

○ **박지원 위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지. 검찰을 어떻게 믿어요?

○ **감사원장 권한대행 조은석** 위원님,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심우정 총장과 박세현 고검장은 잘할 거라고 봅니다.

○ **위원장 정청래** 하여튼 그거는 그것대로 하더라도 특검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필요한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수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게 지금 제일 필요한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건태 위원** 국방부 차관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언론 발표에 의하면 검찰이 군과 같이 합동 수사한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혹시 군검찰이나 군사법경찰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예, 지금 군검찰 파견 인원을 대검 쪽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요청하는 인원들을 지금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건태 위원**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의사결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했고 모든 비상계엄의 기획은 방첩부대에서 한 걸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증거가 방첩사령부에 있을 거라고 봐요. 방첩사령부의 컴퓨터하고 자료 또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컴퓨터하고 자료 이거에 대한 군검찰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이 굉장히 급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지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러한 것 관련해 일련의 수사를 위해서 검찰하고 같이 합동수사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건태 위원** 차관님, 즉시 그 부분을 지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포고령 있잖아요, 1호 포고령. 그걸 국방부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방첩사령부에서 작성한 거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았고, 그 작성한 실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만약에 이 포고령을 국방부검찰단에서 작성했다면 국방부검찰단은 이내란의 정범인데 자기가 그걸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국방부검찰단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걸로 보면 되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이 포고령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유신의 포고령과 전두환의 포고령에서도 국회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유신의 포고령, 72년 10월 17일 날 유신 계엄포고 1호는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여기 국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80년 5월 17일 날 비상계엄 전국 확대 포고령 제10호, 이게 이른바 내란죄로 처벌받은 그 포고령인데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고 돼 있어요. 역시 여기에도 국회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포고령에서는 국회를 건드렸다는 말이에요. 국회를 언급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반드시 이걸 적발해야겠어요. 아셨습니까, 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아마 수사 과정에서 그것이 규명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 1분만 하세요.

○**장경태 위원** 공수처장님 또 감사원장님 대행께도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자 질의를 부탁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국민들께서 검찰 수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검사 출신 후배들 데리고 이렇게 통치하다가 검찰공화국 만들어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도 채 해병 사건과 관련돼서 저희가 얼마나 많이 청문회 했는지, 국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아직도 군검찰단장, 김동혁 단장 맞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수사 외압 사건의 수사 대상자인데?

공수처장님도 수사 앞으로 하실 거라고 믿고요. 감사원에서도 여러 행정 지휘체계, 명령 지휘체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 문서에 대해서 저는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은폐하고 왜곡할지 정말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꼭 감사원에서 자료 확보 차원에서라도 감사 자료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태 위원** 예.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아까 제가 검찰에 대해서 말한 것은 제가 검찰 출신이라서 두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검찰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이 잘할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장경태 위원** 자료 확보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저희 감사원도 감사원이 할 역할이 있으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건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은 수사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솔직히? 사람은 아무도.....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사람은 안 믿는데요, 지금 상황이 검찰로서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의 말에 따르면 류혁 감찰관도 옛날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과거를 또 갖고 있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이 확 확 변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고서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항상 눈치 보고 제 살길 찾고 또 금방..... 그래서 8월 16일 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8월 16일 날 독립운동하겠다고 태극기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8월 14일까지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는데 8월 16일 날 태극기 들고 나온다고 독립운동가로 우리가 칭송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 위원**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지금 포고문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병커에 설치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 포고문, 제1호 포고령 관련해서 법률적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김동혁 군검찰단장, 국방부검찰단장밖에 없다 이런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고문을 김동혁 검찰단장이 작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지금 차관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검찰에서 군검찰까지 포함해서 합동수사단을 지금 만들겠다..... 김동혁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 보시고 여기가 합동수사단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혁 검찰단장은 박정훈 대령 구속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기소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포고문 자체가 국회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에 대한 침해가 있고 위헌·위법적인 포고문인 겁니다. 이런 걸 작성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쨌든 국회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대통령실인지 군검찰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 본부로 발령을 내 놓으셨어요. 체포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 본부로 발령을 내 놔서? 신병 확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인형 후임으로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을 하셨거든요. 이 사람 넘버 투인데, 여인형 직속 아닙니까? 같은 입장 아닐까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방첩사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가서 임무 수행하는 건 제한이 된다는 판단이 됐고, 최근에 보직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방첩사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중립성을 가지고 지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은정 위원** 계엄군들이 선관위 가 가지고 선관위 서버 사진 촬영하고 선관위의 그 자료들을 가져가서 파기하고 있다는 첨보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경민 직무대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국방부차관이 그거를 지금 중단시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정말로 중단하는지 제대로 살피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이 내란의 증거거든요. 그다음에 군사반란의 증거들이고.

지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대체 계엄사령관의 지휘 없이 어떻게 계엄군이 국회에 침투하게 할 수 있었는지, 그거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군사반란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총장이 얘기한 것은 계엄사령관 임무를 받은 이후에 사령부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구성과 진행 속에서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또 지시하지 않은 병력이 움직인 것으로 얘기를 했고,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국방부가 조치를 할 것입니다.

군검찰단장이 포고령을 작성한 주체가 아니냐는 말씀은 제가 그런 언론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면해서 직접 확인한 결과 본인은 그런 거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고.

○**박은정 위원** 본인은 안 했다고 하겠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또 아까 그 합동수사를 위한 군검찰 파견을 위해서 국방부 인원이 가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말씀 때문에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이번에는 국방부검찰단 소속이 아닌 예하 각 군에 있는 검찰 인원들로 파견을 해서 일단 하는 쪽으로 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계엄령하에서 군의 지휘체계가 다 망가져서 계엄사령관의 지휘 없이 군이 움직이고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거든요, 대한민국 군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모든 곳이 이래요. 검찰 한번 보세요. 검찰 저렇게 엉망진창 됐습니다. 지금 검찰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어요. 군도 지금 엉망진창이 됐고 대한민국 자체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했습니다.

명태군 씨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권총 든 다섯 살짜리 꼬마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일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 꼴이 돼 가고 있어요. 위험한 것은 빨리 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방부차관이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ري는데 지금 누구보고 대북 경계 위험 이런 얘기 합니까? 지금의 내란, 비상계엄을했던 군의 이 3인방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을 가장 이롭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국가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고 북한이

어쩌면 오판할 수 있게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관점을 전환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북에도 가장 위험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엊그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충성하고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다 잡아들여야 돼요. 이 사람이 어쩌면…… 시민들이 아니었고, 저는 한 30분, 1시간만 시민들이 늦게 나왔어도 국회 본회의장이 계엄군에 다 장악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법사위도 못 하고 저는 지금 방첩사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있을 거예요. 일촉즉발, 절체절명의 위기였단 말입니다. 그 위험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은 아직 행위를 한 거예요, 국가를 도탄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끼어 가지고,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 수사를 하겠다는 등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이번 기회에 짹 다 정리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한테 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는데 제가 그 말대로 하면 이번 내란 사태, 비상계엄에 관련된 자들은 짹 다 잡아들여야 돼요. 다섯 살짜리 꼬마가 권총 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그 부류들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담을 넘어 들어왔어요.

조은석 직무대행님,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경찰이 막으면 그건 뭘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잘못된 거지요.

○**서영교 위원** 잘못된 거고 그래서 내란죄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국현을 문란시켜서 내란죄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 검찰은 누구의 검찰입니까? 그 검찰은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좀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소됐어요. 공소장을 검찰이 썼어요. 그 공소장에……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을 받았다 쥐셔 김영선으로부터 매달 세비의 반을 받았습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내용이 공소장에 있는데…… 명태균이 뭐라고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고 김영선으로부터 세비를 반 받아 갑니까? 그 뒤에 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김건희가 있고 윤석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경선 때부터 애썼으니까 김영선 좀 해 줘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검사 해서 박근혜 대통령 징역 때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다 아는 사람이 자기는 함부로 개입해요.

법무부장관에게 그리고 행정처장님께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명태균 공소장에 김건희하고 윤석열의 이름이 빠졌어요. 대통령 부부의 두 이름이 빠졌어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김영선을 불러다가 ‘당신의 공천은 내가 주는 선물인데 그 선물의 대가로 명태균과 명태균의 딸 황금이를 책임져라’라고 했어요. 이런 모든 게 나왔고, 수사해서 다 나왔어요. 명태균의 핸드폰, PC, 아직 황금폰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PC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것 가서 강혜경, 모든 사람이 진술 다 했어요. 그리고 수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빼졌단 말이에요. 저는 들어가게끔 쓸 준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 믿겠어요, 아무도.

그리고 이 내란의 주역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요. 원래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포해야 되는데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제가 아무도 못 믿겠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민심은, 국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엄청난 힘은 온 세상을 바꿔 버릴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고 말할 줄, 여러분 생각이나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체포하라고 국정원 차장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걸 한동훈이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양심 고백으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당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부가 온 세상을 쥐고 흔들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대통령이었어요. 여론 조작으로 대통령이 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당선부터 무효였어요.

이제 오늘내일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공범들은 스스로 자백하고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 위원** 1분만 좀 주시면……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위원** 국방부차관님, 방금 보도가 좀 있었는데요,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이 이번 검찰 특별수사본부 거기에 합류했다라고 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김동혁 검찰단장이 아까 장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실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서 거짓말이 가득한 영장을 청구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수사하면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법사위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두 번째는 김동혁 그 사람이 척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번 포고령에 의료인에 대해 계엄법 위반 시 척결한다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동혁이 이것 쓴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어서 법사위에 출석시켜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할 텐데요, 김동혁이 거기에 합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예, 확실하게 그것 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이것 다 보고 계십니다.

○**위원장 정청래** 차관님, 김동혁 단장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청문회 때나 여러 가지 발언과 태도로 봤을 때 매우 부적절한 합류인 것 같습니다. 그것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국회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20초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30초 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12·3 내란죄가 지금 수사가 가속화되는데 법원행정처장님, 경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12·3 내란수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는데 그런 보고 받았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은 그런 보고받는 자리는 아니라서 받은 적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경찰에서 발 빠르게 수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방차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박지원 위원 국방차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지원 위원 물론 검찰에서 동부지검에 검사 20명을 파견해 가지고 수사단을 구성했다는데 거기에 군검찰단 파견하면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지.
잘하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회의를 마치면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사를 또 보면 ‘한동훈, 윤과의 회동서 직무 정지 뒤집을 만한 발언 못 들었다’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는데 둘이 합의된 게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특별한 조치를 안 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조치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직무 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직무 정지에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라 하고 요구한 것 같은데 그것은 대국민사과를 아마 뜻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의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고, 그러면 국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열차는 시동을 걸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들의 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탄핵 열기를 결코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가 어제 사설에서 ‘여론조사 나오면 봐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15%로 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16%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세요. 월요일 날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6%, 5%까지 가는 거예요, 흐름상. 국민의 95%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직을 하루라도 더 할 수 있겠

습니까? 그 상황에서 현재인들 어찌 달리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천지개벽을 하고 있고 급변하는 사회의 변동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월 14일까지 잘못된 일을 했더라도 15일, 16일부터는 속죄하고 뭔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발언 정정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뭘 또 해요?

○**김승원 위원** 단어를 좀……

○**위원장 정청래** 예.

○**김승원 위원** 제가 아까 김동혁 검찰단장이 ‘척결’이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고 그랬는데 척결이 아니라 ‘처단’입니다. 포고령에 있는 ‘제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그것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처단을 잘 쓰는 걸로 저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게 맞군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곽규택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정청래 조배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원장권한대행 조은석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법무관리관 홍창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법제처

처장 이완규

○ 법원측 참석자

법원 행정처

처장 천대엽

○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김정원

【보고사항】

○ 의안 회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3)

이상 4건 11월 25일 회부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0)

이상 2건 11월 26일 회부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6)

이상 2건 11월 27일 회부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8)

이상 5건 11월 28일 회부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9)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11. 28.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8)

이상 9건 11월 29일 회부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9)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1. 29.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8)

이상 7건 12월 2일 회부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4)

이상 2건 12월 3일 회부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3)

이상 5건 12월 4일 회부됨